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관세청고시 제2006-16호(2006.3. 2)	관세청고시 제2013- 50호(2013. 6.11)
관세청고시 제2006-36호(2006.9. 1)	관세청고시 제2013- 72호(2013.10.11)
관세청고시 제2007-14호(2007.6. 1)	관세청고시 제2014- 14호(2014. 1.24)
관세청고시 제2008-21호(2008.7.15)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4- 42호(2014. 4.24)
관세청고시 제2009- 2호(2009.1.26)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4-103호(2014.11.20)
관세청고시 제2009-67호(2009.8.2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5- 68호(2015.12.29)
관세청고시 제2010-21호(2010.2.10)	(전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6 -63호(2016.12.27)
관세청고시 제2010-86호(2010.3.29)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7- 79호(2017.12.29)
관세청고시 제2010-81호(2010.6.10)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9- 29호(2019. 7. 1)
관세청고시 제2012-21호(2012.10.4)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19- 68호(2019.12.20)
관세청고시 제2013- 45호(2013. 5.31)	(일부개정)관세청고시 제2020- 00호(2000.00.0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발급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협정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yesfta.customs.go.kr>)을 말한다.
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을 말한다.
7. “원산지소명서”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

##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 제1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관한 절차

**제4조(적용대상)**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
2.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 신고(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포함한다)한 물품으로 한다.

**제5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
2.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
3. 제2호에 따른 배정 이후 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적용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수량에 대해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 ① 통관지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세액정정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잔여수량의 게시)**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별 적용수량
2. 품목별 배정수량
3. 품목별 남은 적용수량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 제2절 특정물품의 원산지확인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계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과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절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0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규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 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 ② 제1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

**제11조(신청서류 확인)**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
-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3. 보완기간(규칙 제21조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4.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제3호의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계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1.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X’ 표시
2. 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3. 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①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16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별표2의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면제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및 원산지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관세체납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세관장은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4절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9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제18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3.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4.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기재요령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①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보
2.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재사항의 수정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 제3장 원산지증명

### 제1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21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portal.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사이트(cert.korcham.net)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법」 제3조에 따라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으로 한다.

**제22조(증명서발급기관)**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2조에 따른 세관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② 증명서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23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
4.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으로 처리한 실적

**제24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고의 또는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 ③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규칙 제13조의 서류로 제조과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2-2(이하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이라 한다)와 같다.

⑥ 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전자문서 방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 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 대한상공회의소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② 제26조제5항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의 경우 규칙 제13조의 국내 제조(포괄)확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1. 공급물품명세 ‘주요 생산공정’란에 ‘간이발급대상물품’ 문구를 추가로 기재
2. 재료명세 중 ‘품목번호·원산지재료 해당여부·가격’ 내역은 기재 생략 가능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 제5란(Remarks)에 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 선적일 후 7 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소급발급”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29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에 현지확인 통지를 할 수 있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 3. 확인대상 내용

####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연기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한 현지확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현지확인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누는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법 제44조 내지 제45조

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

3. 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9조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서류 심사)** ①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5.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협정 및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 받은 협정 및 품목번호 6단위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4.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3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인도와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분 2부
  2. 그 밖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분 1부
-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부분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재발급 신청 사유서
3.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
4.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 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아세안회원국, 인도와의 협정 및 베트남과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2. 그 밖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④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2. 베트남과의 협정

**제36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제2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발급기관에 발급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취하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38조(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1. FTA 법령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3.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3. 원산지·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6. 자유무역협정

②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별도로 기재·관리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①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
2.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



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①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재료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2.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제43조(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수출용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절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4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 제4절 원산지관리사

**제45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①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 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장 원산지조사

**제46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 제49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4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영 제52조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부서(이하 “사전심사기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심사기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 관세평가분류원
2.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세원심사과
3.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 관세청 통관기획과
4. 영 제37조제1항제5호 : 관세청 특수통관과
5. 기타 사항 :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메일(E-Mail)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①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0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신청서류의 보정)** ①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3.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4.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6.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1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기관(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2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3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영 제38조에 따른 이의제기서와 첨부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
3. 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제56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과 반려에 대하여는 제49조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5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① 수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이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특혜적용의 요건 충족 여부
2.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의 요건 충족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③ 통관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협정 관세 적용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 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④ 통관지세관장은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통관지세관장은 제3항 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59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60조(범칙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44조 및 제45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전자메일(E-Mail) 또는 FAX로 하여야 한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6-63호(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는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서식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7-79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 29호(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 68호(2019. 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0- 00호(202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000 서명

[별표2]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물품

적용협정	HSK	품명·규격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2505100000	SILICA SAND (규사)	VN, MY	완전 생산 기준
	2521001000	LIMESTONE (석회석)	VN, MY	
	2905173000	STEARYL ALCOHOL (알코올)	ID, PH	
	2922413000	L-LYSINE MONOHYDROCHLORIDE (아미노화합물)	ID	
	3823120000	OLEIC ACID (공업용 지방산)	MY, ID	
	4408319011	MALAYSIAN DIRIED VENEER (베니어용 단판)	MY	
	7403110000	COPPER CATHODE (정제구리)	PH	
	8001100000	TIN INGOT (주석)	MY, ID	
싱가포르와의 협정	2912193000	BUTYRALDEHYDE (유기화합물)	SG	
	2915600000	PENTANEDIOL MONOISOBUTYRATE (유기화합물)	SG	
	3206110000	TITANIUM DIOXIDE (안료)	SG	
	3707902920	DEVELOPERS (사진용 화학 제품)	SG	
	3811210000	LUBRICATING OIL ADDITIVE (윤활유 첨가제)	SG	

[별표2-2]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

※ 다음의 국내 가공 공정은 간이발급대상물품에서 제외

- 국내 제조·가공 공정이 반제품 및 블랭크를 이용하여 생산하거나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수출품)의 품목분류번호(HSK)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동 별표의 품목번호, 품명 등은 간이발급대상물품 확인 목적만으로 사용가능하며, 기타 목적(예 : 품목분류 확인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1	1902.19-1000	국수	밀이나 옥수수, 쌀, 감자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발효하지 않은 국수  -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하며(통칙 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脞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 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2	1902.19-2000	당면	감자나 고구마전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면  -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하며(통칙 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脞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 증숙 공정을 거쳐 생산	
3	1902.19-3000	냉면	전분(감자·고구마)가루에 메밀가루나 칩가루 등을 혼합하여 반죽한 면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 쌀가루, 메밀가루, 전분, 기타 곡물 가루를 원재료로 반죽, 성형 공정을 거쳐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다만, 스프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脞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생산	
4	1902.30-1010	라면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긴 즉석식품  <제외대상> - 다만, 스프 등이 함께 소매포장된 경우 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하며(통칙3나),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소시지·육(肉)·설육(脞肉)·피(blood)·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제1101호)와 전분 등으로 면을 만들고 유탕(제1511호 등) 처리한 후 제조된 분말스프(제2103호)와 함께 소매포장	면 발 ( 제 1902호)을 공급 받아 생산시 간소화 발급 대상에서 제외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밀가루에 설탕이나 버터, 마가린, 계란, 첨가제 등을 넣어 구운 과자  <제외사항> - 제1905.31호 스위트비스킷*과 구분 * 가루, 설탕, 지방, 감미료 등 함량이 전 중량의 50% 이상인 것(전중량 설탕10% 이상, 전중량 지방 35% 이하, 완제품의 수분12% 이상)  - 단 굽지 않은 반죽 상태의 생지는 제 1901호에 분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공정을 통해 생산	제1901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가루반죽을 공급 받아 생산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베이커리제품을 공급 받아 분쇄하는 공정만 거치는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6	1905.90-1090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 (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곡물가루에 설탕이나 버터, 마가린, 계란, 첨가제 등을 넣어 구운 기타의 베이커리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밀가루나 곡물가루를 반죽, 성형, 굽기 또는 튀김(유탕) 공정을 통해 생산	제1901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가루반죽을 공급 받아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제외)				생산시 원산지 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베이커리제품을 공급받아 분쇄하는 공정만 거치는 경우 원산지 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	2005.99-1000	김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배추, 무 등 각종 야채 등을 주·부재료로 절임, 각종 양념과 버무림 과정을 거쳐 생산	
8	2106.90-4010	조제김	해초류인 김에 소금과 기름 등을 발라 구운 조미김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김(제1212.21호)에 식물성 유지(제1515호)와 소금 등을 첨가하여 굽기	
9	2503.00-0000	황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	탈황공정을 통해 얻은 정제하지 않은 황이나 증류하여 정제된 고체 또는 분말 상태의 황  <제외대상> - 승화황, 침강황, 콜로이드황(제2802호) - 살충제 등 소매포장 형태로 제조된 것(제3808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천연가스나 원유에서 탈황 공정을 통해 황을 생산	
10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제외대상> -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11	2710.19-2020	제트 연료유	<제외대상> -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등유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생산시 원산지 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2	2710.19-3000	경유	<제외대상> -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출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2710)을 재료로 사용시 원산지 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외
13	2710.19 -5020	윤활유 기유 (基油)	기계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윤활유 의 원료  <제외대상> - 석유나 역청유의 함량이 70% 미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 과정에서 추 출되며, 정제공정, 수소첨가 분해 또 는 탈왁스 (Dewaxing) 공정 등을 거쳐 생산	제 2710.19 호에 해당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시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외 예시) 제 27190.19-5 010호의 조 유를 원재 료로 제 2710.19-50 10호의 윤 활 기 유 를 생산
14	2902.20 -0000	벤젠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분자식 : C6H6 -CASNO.71-43-2  <제외대상> - 순도 95% 미만인 것(제27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 출한 나프타를 분 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15	2902.30 -0000	톨루엔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분자식 : C6H5CH3 -CASNO.108-88-3  <제외대상> - 순도 95% 미만인 것(제27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콜타르를 고온 증 류해서 추출한 나 프타(제2707호)나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 출한 나프타를 분 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16	2902.43 -0000	파라-크실렌	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분자식: C8H10 -CASNO.106-42-3  <제외대상> - 순도 95% 미만인 것(제2707호)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한-인도CEPA	원유(제2709호)의 증류과정에서 추 출한 나프타를 분 해하는 과정에서 추출	
17	2909.43 -0000	에틸렌글리 콜의 모노부 틸 에 테 르 와 디에틸렌글 리콜의 모노 부틸에테르	페인트나 잉크의 용제, 세정제 등의 원료로 사용  -에틸렌글리콜의모노 부틸 에 테 르 (CASNO.112-07-2)  -디에틸렌글리콜의모 노 부틸 에 테 르 (CASNO.112-34-5)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원유 정제공정 에서 생산되는 부탄 올(제2905.13)과 에틸렌옥사이드(제 2910.10)를 주요원 재료로 합성, 숙 성, 정제/증류 공 정을 거쳐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18	2917.14 -0000	무수말레산	무색 바늘 결정 모양으로 가소제, 폴리에스터수지, 알키드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합물(CAS NO. 108-31-6)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1.벤젠(제2902호)을 산화바나듐의 촉매하에 400~500°C에서 공기 산화시켜 생산 2.부탄(제2711호) 또는PA(Phthalic Anhydride) 제조 시 발생한 부산물을 정제하여 생산	말레산(제2917호)을 가열하거나 탈수하여 생산한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9	2917.35 -0000	무수프탈산	무색바늘결정 모양으로 프탈산가소제나 도료, 폴리에스테르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CASNO.85-44-9)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크실렌(제2902호)을 산화바나듐, 촉매 등을 이용하여 산화하여 생산	단순히 프탈산(제2917호)을 가열하거나 탈수하여 생산한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	2917.36 -1000	테레프탈산	폴리에스터섬유, PET 수지, 필름도로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주원료로 사용(CASNO.100-21-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원유로부터 정제된 파라크실렌(제2902호)을 주원료로 산화, 정제, 분리, 건조 공정을 거쳐 제조	
21	2917.37 -0000	테레프탈산 디메틸	테레프탈산에 있는 2개의 카복시기의 각 수소원자가 메틸기로 바뀐 에스터  • CASNo : 120-61-6 • 화학식 : C <sub>10</sub> H <sub>10</sub> O <sub>4</sub> • 용도 : 폴리에스테르게 섬유나 필름 등의 원료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파라자일렌(P-xylene)을 산화, 정제하여 테레프탈산을 만들고, 이를 메탄올 에스테르화 공정을 통해 제조	테레프탈산(제2917.36호)과 메탄올을 원료로 하여 완제품(제2917.37호)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	2917.39 -1000	이소프탈산	프탈산과 테레프탈산의 이성질체인 무색결정의 방향족 화합물로 알키드수지·폴리에스터수지·폴리아마이드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CASNO.121-91-5)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방향족 탄화수소인 m-자일렌(제2902호)을 산화하여 생산	
23	2929.10 -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섬유, PET수지, 필름도로 등의 주원료로 사용(CASNO.584-84-9)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톨루엔(제2902호)을 니트로화 시켜 디니트로 톨루엔(제2904호)을 제조하고 수소반응 시켜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24	3212.10 -0000	스탬프용 박 (箔)	피소재에 전사하는 방 법으로 인쇄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것  <제외대상> - 안료 등이 없는 금 속박 등은 제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투 명 플 라 스틱 (PET, OPP 등)필 름에 글루 등과 결합시킨 안료나 금속가루 등을 증 착, 접합하여 생산	
25	3215.19 -0000	인쇄용잉크 (흑색의것은 제외)	<제외대상> - 포토레지스트 또는 카트리지에 담긴 토 너(제37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유기착색제 등을 용제나 수지 등에 섞어 만든 전색제 에 개어 미세하게 분산시켜 생산	잉크·필기 용 잉크·제 도용 잉크 와 그 밖의 잉크를 공 급받아 카 트 리 지 를 생 산 하 는 경우 원산 지증명 간 소화 대상 에서 제외
26	3305.10 -0000	샴푸	두피, 모발세정제  <제외대상> - 두피, 모발용 외에 체모나 애완용은 제 외(제3307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계면활성제(알킬황 산염 등)에 기포 증진제(아민옥사이 드 등), 유화제, 점 증제 등을 혼합하 여 제조	
27	3401.30 -0000	바디클렌저 ( b o d y cleanser)	피부세정제  <제외대상> - 소매용이 아닌 것 (제3402호) 또는 동 물용(제3307호) 제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유기 계면활성제 를 주 원재료로 화학재료 또는 천 연재료를 사용하 여 혼합 또는 교 반 과정을 거쳐 생산	
28	3506.91 -1000	제3901호~제 3913호의 폴 리 머 (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광학용 투 명 접착 필름 접착제·광학 용투명 경화 성 액상접착 제(평판디스 플레이 또는 터치감지 스 크린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종류의 것)]	아크릴수지나 폴리머 계열의수지 등을 기본 으로 한 조제 접착제  <제외대상>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순중량 1kg 이 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01호~제3913 호의 폴리머 (polymer)나 고무 등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생산	
29	3506.91	제3901호~제	아크릴수지나 폴리머	한-중 FTA,	제3901호~제3913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9000	3913호의 폴리머 (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한 접착제 [광학용 투명 점착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감지 스크린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계열의 수지 등을 기본으로 한 조제 접착제 <제외대상>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순중량 1kg 이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호의 폴리머 (polymer)나 고무 등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생산	
30	3707.90 -1090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또는 오일이디 제조용은 제외)	빛에 의해 약품 내성이 변화하는 감광성 화합물 <제외대상> - 회토류 등 귀금속의 염과 그 밖의 물질 (제2943호~제2846호, 제285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 (제3901호~제3914호)과 첨가제 (제29류 또는 제38류)를 사용하여 용해과정을 거쳐 생산	
31	3817.00 -0000	혼합 알킬벤젠과 혼합 알킬나프탈렌 (제2707호·제2902호의 물질은 제외)	알킬기가 치환된 알킬벤젠 또는 알킬나프탈렌의 혼합물 <제외대상> - 이성질체 혼합물의 것 (제29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원유를 통해 생산된 등유나 방향족 탄화수로 등에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생산 1.염화파라핀에 의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알킬화 2.모노알킬벤젠의 불균화 반응 3. 선형 알킬벤젠의 알킬화 4. 올레핀에 의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알킬화	
32	3903.20 -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SAN)	스티렌(S)에 아크릴로니트릴(A)을 중합시킨 수지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럽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스티렌 (제2902.50호)과 아크릴로니트릴 (제2926.10호)을 중합, 압출 공정을 통해 생산	
33	3903.30	아크릴로니	아크리니트릴(A),	한-중 FTA,	아크릴로니트릴(제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0000	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 (ABS) (일차제품의 것)	부타디엔(B), 스티렌(S) 중합시킨 수지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 단일 단량체 함량이 전체중량의 95% 이상인 것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400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2926.10호), 부타디엔(제2901.24호), 스티렌(제2902.50호)을 주요 원재료로 중합공정을 거쳐 생산	
34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공중합체 (일차제품의 것)	기타의 스티렌부타디엔중합체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 단일 단량체 함량이 전체중량의 95% 이상인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스티렌(제2902.50호)과 부타디엔(제2901.24호)을 배합, 압출 공정을 거쳐 생산	
35	3904.22-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 제외)	가소화 한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일차(블록, 플레이크, 가루 등)제품  <제외대상> -스크랩이나 웨이스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VCM(Vinyl Chloride Monomer)을 중합하여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스크랩을 재생하여 생산	
36	3906.10-000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일차제품의 것)	메타아크릴산메틸중합체 수지로 광선 투과율이 높음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제40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요 원재료는 제29류 및 제39류, 제38류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원료 배합, 중합 공정을 거쳐 생산	
37	3907.61-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점도 번호가 그램당 78밀리미터 이상인 것)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지로 흔히 PET라고 함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150 ~ 230℃에서 테레프탈산(제2917.36호), 테레프탈산디메틸(제2917.37호), 에틸렌글리콜(제2905.31호) 등을 중합시켜 생산	
38	3907.69-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지로 혼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150 ~ 230℃에서 테레프탈산(제2917.36호), 테레프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점도 번호가 그램당 78밀리미터 이상인 것 제외)	히 PET라고 함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탈산디메틸(제 2917.37호), 에틸렌글리콜(제2905.31호) 등을 중합시켜 만듦	
39	3909.40-0000	페놀수지 (일차제품의 것)	페놀류와 포름알데히드로 제조되는 열경화성 수지  <제외대상> - 일차제품(블록, 럼프, 플레이크, 가루 등) 형상이 아닌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2907호의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제2912.11호)를 주요 원재료로 주반응 공정을 거쳐 생산	
40	3909.50-0000	폴리우레탄 (일차제품의 것)	고분자화합물로 탄성 섬유 (스판텍스) 원료, 바니시나 도료,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  <제외대상> - 이온교환수지(제 391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29류의 화학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제 3909.10호, 제 3909.20호, 제 3909.31호, 제 3909.39호, 제 3909.40호 등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41	3917.40-0000	플라스틱 연결구	조인트(joints)·엘보(elbows)·플랜지(flanges)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연결구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3914호) 및 플라스틱 웨이스트(제3915호)를 기본 원재료로 사출 또는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연결구 반제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42	3918.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나 바닥 깔개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롤이나 타일모양으로 된 플라스틱바닥깔개 (접착성유무 불문)  <제외대상> - 단순절단한 직사각형 깔개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요 원재료는 제 3920호 또는 제 3921호에 속하는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으로 식물과 합지 또는 봉제 또는 라미네이팅 공정을 통해 생산, 플라스틱 1차제품을 원재료로 성형하여 생산하여도 무방	동일 호 내의 바닥 깔개(반제품)를 제3920호 또는 제 3921호의 원재료와 합지하는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43	3919.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	<제외대상> - 영구적인 접착성이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플라스틱 일차 제품 또는 제3920호	접착성이 있는 판·시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 (롤 모양의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	없는 물품 (예: 포스트 잇) - 평면모양이 아닌 것(제3926호)	한-베트남 FTA	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등을 원재료로 재단·인쇄 등의 단순공정만 거치는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44	3919.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 (롤 모양의 것은 제외)	<제외대상> -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는 물품 (예: 포스트 잇) - 평면모양이 아닌 것(제3926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주요 원재료로 합지공정을 거쳐 생산	접착성이 있는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등을 원재료로 재단·인쇄 등의 단순공정만 거치는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45	3920.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제외대상> -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 제품인 폴리에틸렌을 원재료로 원료배합,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아 합지공정을 통해 생산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46	3920.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제외대상> -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제3914호)과 첨가제(제38류 또는 제29류)를 사용하여 압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아 합지공정을 통해 생산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47	3920.51-0000	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재질 외의 아크릴중합체 것)으로	<제외대상> - 외관상 시폭이 5mm이하(제39류 주 10참조) -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21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3914호) 및 플라스틱 웨이스트(제3915호)를 기본 원재료로 사출 또는 압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만든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호)		출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48	3921.13-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제외대상> -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 또는 보강하지 않은 플라스틱 판·시트·필름을 주요 원재료로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공정을 거쳐 생산	
49	3921.19-1010	플라스틱 판, 시트 등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것으로 이차전지 격리막 제조용의 것)	<제외대상> - 판이나 시트에 구멍을 내거나 모서리연마 등 그 이상의 가공처리를 것 - 다른 재료로 적층, 보강한 것(제3918호, 제3919호, 제3922호~3926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성형하여 생산	여러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 등을 적층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50	3923.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외대상> - 가정용품(예: 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 양념통, 주전자)(제3924호) - 벌크 컨테이너(제6305호) - 신변장식용품(제42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 또는 제3920호(플라스틱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	
51	3923.21-0000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포장대 [콘(cone)을 포함한다]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포장용기 <제외대상> - 가정용품(제3924호) - 벌크형 컨테이너(제6305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요원재료는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에 속하는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으로 합치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 하여도 무방	
52	3923.29-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대 [콘(cone)도 포함한다]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것은 제외)	<제외대상> - 가정용품(예: 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 양념통, 주전자)(제3924호) - 벌크 컨테이너(제6305호) - 신변장식용품(제42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보강하지 않은 플라스틱 판·시트(제3920호), 폴리우레탄(제3909호), 플라스틱 일차제품(제3901호 및 제3909호, 제3907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53	3923.30 -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제외대상> - 가정용품(예: 쓰레기통) 또는 식탁용품(예: 양념통, 주전자)(제3924호) - 벌크 컨테이너(제6305호) - 신변장식용품(제42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사출·성형공정을 거쳐 생산	뚜껑·마개·캡(제3923.50호)을 공급받아 결합한 물품은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54	4002.11 -0000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스티렌-부타디엔 고무로 만든 일차제품(판·시트·스트립)형상(라텍스) *제40류 주3호 참조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스티렌과 부타디엔을 주요 원재료로 유화제 등을 공중합하여 생산	합성라텍스 폴리머(제4002.11호)와 기타 화학제품으로 교반 과정만 거칠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55	4002.20 -9000	부타디엔 고무(라텍스는 제외)	부타디엔을 중합하여 만든 합성고무  <제외대상> - 가황제나 활성제, 가소제, 안료(식별을 위한 안료 첨가는 허용) 등의 물질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부타디엔(제2901.24호)을 원재료로 중합반응 및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56	4002.59 -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라텍스는 제외한다)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로 만든 일차제품형상(라텍스는 제외한다) *제40류 주3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폴리부타디엔 라텍스를 스티렌과 아크로니트릴(SAN)을 그래프팅 시키는 공정을 거쳐 생산	합성라텍스 폴리머(제4002.11호)와 기타 화학제품으로 교반 과정만 거칠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57	4005.10 -1000	가황하지 않은 배합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	가소제 등과 같은 배합제를 첨가한 고무  <제외대상> - 재생고무(제4003호) - 방직용 직물제에 고무판이 보강된 경우(제5906호)	한-중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고무(제4001호) 또는 합성고무(제4002호)와 카본블랙(제2803.00호)등을 주요 원재료로 원료 배합, 성형, 시트냉각 공정을 거쳐 생산	
58	4009.21 -0000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판·파이	금속으로 보강된 고무 재질(가황)의 판·파이프·호스(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4001호~제4008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는 성형 공정을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프 · 호스(연 결구를 부착 한 것은 제 외한다)	(flange) 등의 연결구 류가 부착되지 않은 것) <제외사항> -절단(세로) 길이가 관의 횡단면 치수보 다 작은 것(예 : 이너 튜브, 제조용튜브)		거치고 금속 와이 어 등으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59	4009.31 -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 강되거나 결 합된 호스 (연결구를 부착한 것 제외한다)	방직용 섬유로 보강된 고무재질(가황)의 관· 파이프·호스(조인트 (joint)·엘보(elbow)·플 랜지(flange) 등의 연 결구류가 부착되지 않 은 것) <제외사항> -절단 길이가 횡단면 치수 보다 작은 것 (예 : 이너튜브 제조 용 관 등) -직조한 호스(제5909 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4001호~제4008 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 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섬유재료 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60	4009.32 -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 강되거나 결 합된 호스 (연결구를 부착한 것)	방직용 섬유로 보강된 고무재질(가황)의 관· 파이프·호스로 조인트 (joint)·엘보(elbow)·플 랜지(flange)등 연결구 류가 부착된 것 <제외대상> -절단 길이가 횡단면 치수보다 작은것(예: 이너튜브 제조용 관 등) -직조한 호스(제5909 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4001호~제4008 호의 고무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 또 는 성형 공정을 거치고, 섬유재료 로 보강 공정을 거쳐 생산	고무 호스 를 공급받 아, 플라스 틱 또는 금 속 재 질 의 연결구 부 착 작업공 정만을 수 행하는 경 우 원산지 증명 간소 화 대상에 서 제외
61	4011.10 -1000	고무 타이어 [래디알 구 조의 것(승 용자동차용, 스테이션 왜 건과 경주 자동차용 포 합)]	<제외대상> - 재생품이나 중고 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 는 역외산 타이어 반 제품을 원 재료로 생 산한 물품 은 원산지 증명 간소 화 대상에 서 제외
62	4011.20 -1010	고무 타이어 [버스용, 화 물차용 (래 디알 구조의 것으로 립의	<제외대상> - 재생품이나 중고 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 는 역외산 타이어 반 제품을 원 재료로 생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지 림 이 49.53센티미 터 미만인 것]				산한 물품 은 원산지 증명 간소 화 대상에 서 제외
63	4011.20 -1090	고무 타이어 [버스용, 화 물차용 (레 디알 구조의 것으로 림의 지 림 이 49.53센티미 터 이상인 것)]	<제외대상> - 재생품이나 중고 타이어(제4012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정련, 압출, 압연, 비드, 성형,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	역내산 또 는 역외산 타이어 반 제품을 원 재료로 생 산한 물품 은 원산지 증명 간소 화 대상에 서 제외
64	4016.93 -0000	가황한 고무 제품 [ 개 스 킷 (gasket)·와 셔(washer)· 그 밖의 실 (seal)]	<제외대상> - 황의 배합률이 높 은 딱딱한 경질 (hard) 고무로 만든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성형 공정을 거쳐 생산	성형된 반 제품을 원 재료로 커 팅 공정 (BURR 제 거 또는 불 필요한 부 분 제거)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65	4107.92 -0000	소나 마속의 가죽 (grain split)	<제외대상> - 원피(제4101호) - 그레인 스플릿(제 4104호) - 전신(whole)가죽 (제4107호) - 샴미(chamois)가죽 (제411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소나 마속의 원피 (제4101호) 또는 유연처리 된 소나 마속의 원피(제 4104호)를 광물성 물질로 태닝 (tanning)한 후 탈 수, 건조 등의 공 정을 통해 생산	
66	4114.20 -1000	페이턴트레 더 (적층한 것 은 제외)	에나멜 도료 등을 도 포한 가죽 - 표면 처리한 도료 나 시트의 두께가 0.15m 초과하지 않을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가죽에 바니시 (varnish)· 래커 (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 하여 생산	
67	4810.29 -0000	필기용, 인 쇄용, 그 밖 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 (기계공정이 나 화학-기 계공정에 따 른 섬유유 함유량이 전	<제외대상> - 전사지(제4809호), 카본지(제4809호), 오 프셋인쇄용 종이(제 481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펄프(제4703 호, 제4705호 등) 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쪄 서 무기물질 등으 로 도포하여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섬유 중량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경량의 도포한 종이는 제외)				
68	4810.92 -1010	여러 겹의 종이 (제공 미터 당 중량이 250그램 이 하인 것)	<제외대상> -감광지(제3710호) -전사지·카본지(제 4809호) -벽지(제4814호) -오프셋인쇄종이(제 4816호) -엽서(제48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펄프(제4703 호, 제4705호 등) 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썬 서 무기물질 등으 로 도포하여 생산	
69	4810.92 -9000	여러 겹의 종이 (백판지와 아이보리 판 지는 제외)	<제외대상> -감광지(제3710호) -전사지·카본지(제 4809호) -벽지(제4814호) -오프셋인쇄종이(제 4816호) -엽서(제4817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펄프(제4703 호, 제4705호 등) 에 물과 화공품을 섞어 고온으로 썬 서 무기물질 등으 로 도포하여 생산	
70	5402.11 -0000	아라미드로 만든 강력사	폴리아미드 재질의 강 력사 (강도:단사60cN/Tex 초과, 복합사는 53cN/Tex 초과) *제11부 주6호 참조  <제외대상> -소매용(제5406호), 끈(제5607호), 금속드 리사(제5605호)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 방사 공정을 거쳐 생산	
71	5402.20 -0000	강력사(폴리 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 한다)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강력사(강도:단사 60cN/Tex 초과, 복합 사는53cN/Tex 초과) *제11부 주6호 참조  <제외대상> -소매용(제5406호), 끈(제5607호), 금속드 리사(제5605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 방사 공정을 거쳐 생산	강력사를 공급받아 함연·와이 딩 (winding) 공정만 수 행하는 경 우 원산지 증명 간소 화 대상에 서 제외
72	5407.42 -0000	염색한 합성 필라멘트사 의 직물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 리아미드 필 라멘트의 함 유량이 진중	제5407.10호부터 제 5407.30호의 것을 제외 한 나일론이나 그 밖 의 폴리아미드 필라멘 트사로 직조한 염색 (dyeing) 직물(백색제 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 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 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 사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 화 대상에 서 제외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제외대상> - 합성스테이플사로 만든 직물 (제5512호)		나 직물을 염색욕에 넣고 가열, 후 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73	5407.52-0000	염색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의 염색(dyeing) 직물  <제외대상> - 고강력의 타이어 코드 직물(제590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 사나 직물을 염색욕에 넣고 가열, 후 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4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직물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비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가 전중량의 85%이상의 표백한 직물  <제외대상> - 여과포 등 기계에 사용되는 공업용 직물(제5911호) * 표백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75	5407.61-2000	염색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가 전중량의 85%이상의 염색(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dyeing): 사나 직물을 염색욕에 넣고 가열, 후 처리하여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부여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6	5407.61-4000	날염한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의 날염(printing) 직물 * 날염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77	5407.69 -2000	합성 필라멘트사의 염색한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초과 85%미만의 염색(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8	5407.69 -4000	합성 필라멘트사의 날염 직물 (비(非)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비(非)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초과 85%미만의 날염(printing)직물 * 날염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79	5407.72 -9000	염색한 그 밖의 직물 (합성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아크릴중합체의 것은 제외)	제5407.10호부터 제5407.69호의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합성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80	5407.82 -2000	염색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합성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	제5407.10호부터 제5407.69호의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합성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81	5407.92 -2000	염색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5407.10호부터 제5407.84호의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합성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dyeing) 직물 * 염색의 정의는 제11부 소호주 1호 참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주로 합성 필라멘트사(제5402호)로 직물을 만들고 여기에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제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 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82	5502-10-1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44,000 테시)	목재나 펄프 등의 섬유소를 용해하여 만든 재생·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한-아세안 FTA	초산셀룰로오스를 주원재료로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텍스 미만인 것)	- '제55류 주1호'에 서 규정한 5가지 토 우의 요건 충족필요			
83	5503.20 -1000	폴리에스테 르의 섬유 (이형단면인 것) [카드 (card)·코움 (comb)이나 그 밖의 방 적준비 처리 를 한 것은 제외한다]	합성 섬유사를 방적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숨모양으로 만든 섬유 (이형단면 의 것*)  *방사구를 원형이 아 닌 Y형 등 여러 모양 으로 하여 횡단면을 변형한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 방사 공정을 거쳐 생산  방사구를 통해 만 들어진 인조필라 멘트사를 절단한 후 토우(병합)로 묶어 섬유모양으 로 만들	제5401호부 터 제5406 호에 해당 하는 재료 를 공급받 아 제전(制 電 : antistatic) 처리 하 거 나, 절단 공정만 수 행하는 경 우 원산지 증명 간소 화 대상에 서 제외
84	5503.20 -9090	폴리에스테 르섬유 (폴리트리메 틸렌테레프 탈레이트의 것은 제외)	합성된 스테이플섬유 중 최대 중량이 폴리 에스테르에 있는 것  <제외대상> - 길이가 2m를 초과 (제5501호) - 카드나 코움 이상 으로 처리된 것(제 5506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 일차제 품(수지)을 원재료 로 방사공정을 거 쳐 생산	
85	5503.90 -0000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섬 유 [카드 (card)·코움 (comb)이나 그 밖의 방 적준비 처리 를 한 것은 제외한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 리아미드의 것, 폴리에 스테르의 것, 아크릴 이나 모다크 릴 (modacrylic) 의 것)(폴리 프로필렌의 것 제외)	기타의 합성섬유사를 방적의 원료로 사용하 기 위해 숨모양으로 만든 섬유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화학재료로 방사 공정을 거쳐 생산	제5401호부 터 제5406 호에 해당 하는 재료 를 공급받 아 제전(制 電 : antistatic) 처리 하 거 나, 절단 공정만 수 행하는 경 우 원산지 증명 간소 화 대상에 서 제외
86	5807.10 -1000	직조하여 생 산한 레이블	상표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섬유제레이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직조공정을 거쳐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를 놓은 것(제5810호)</li> <li>- 의류의 부속품 성격을 가진 견장·완장·휘장(제6217호)</li> </ul>			
87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p>타이어 제조 시 보강재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계 직물</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부 주6호의 강력사 기준 미충족</li> <li>- 고무로 피복·적층한 직물(제5906호)</li> </ul>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p>실로부터 생산되거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직조(weaving)하여 생산한 경우</p> <p>- 원사는 역외산 사용가능</p>	
88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 직물	<p>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폴리염화비닐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목적인 경우</li> <li>-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li> <li>-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li> <li>- 딱딱하지 않을 것</li> </ul> <p>※ 제59류 주2호 참조</p>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p>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제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리를 하여 생산</p> <p>-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p> <p>-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p>	
89	5903.20-0000	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 직물	<p>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폴리우레탄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목적인 경우</li> <li>-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li> <li>-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li> <li>- 딱딱하지 않을 것</li> </ul> <p>※ 제59류 주2호 참조</p>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p>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제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리를 하여 생산</p> <p>-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p> <p>-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p>	
90	5903.90-0000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p>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폴리염화비닐과 폴리우레탄 이외의 플라스틱재질로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p>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p>실로부터 생산되거나, 직물을 제단하고 플라스틱을 도포, 피복, 적층하고 열처리, 방축가공 등의 마감처</p>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폴리(염화비닐) 및 폴리우레탄의 것은 제외]	<제외대상> - 플라스틱이 단순 보강목적인 경우 - 플라스틱이 직물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경우 - 침투, 도포된 플라스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50~55류) - 딱딱하지 않을 것 ※ 제59류 주2호 참조		리를 하여 생산 - 원사는 역외산 사용해도 가능 - 제59류 이외의 역외산 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포나 피복, 열처리 등의 최소 2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것	
91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롱파일(long pile) 편물	<제외대상> - 파일직물(제5801호), 테리 타올지와 테리직물(제5802호), 터프트(tuft)한 직물(제5802호), 편물로 만든 양탄자지(제5705호), 인조모피(제4304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로 만든 경우 직물표면에 기모나 루프를 형성한 것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 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2	6001.21-0000	면으로 만든 루프 파일(looped pile) 편물	면(최대중량)으로 만든 루프(loop) 상의 편물  <제외대상> - 파일직물(제5801호) - 테리 타올지와 테리직물(제5802호) - 터프트(tuft)한 직물(제5802호) - 편물로 만든 양탄자지(제5705호), 인조모피(제4304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섬유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로 만든 경우 직물표면에 기모나 루프를 형성한 것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 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3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합성섬유(최대중량)로 만든 루프(loop)상의 편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편직하여 만든 것, 직물로 만든 경우 직물표면에 루프 등을 형성하고 염색 등의 공정을 거친 것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 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4	6001.92-0000	기타 편물(인조섬유로 만든 것)	롱파일, 루프파일을 제외한 기타의 편물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인조 스테이플 섬유나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등을 편물기계로	직물 염색 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 지 증명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편직하여 생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95	6004.10 -0000	메리야스 편 물이나 뜨 개질편물 (폭이 30cm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 성사의 함유 중량이 전중 량의 100분 의 5이상인 것, 고무실 은 함유하지 않은 것)	한 가닥의 실로 루프 를 형성하여 만든 메 리야스 편물이나 뜨개 질 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 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 량이 5% 미만 - 제품 형상으로 만 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사 또는 인조 섬유사를 편직하 여 생산 - 원사는 역외산 가능	식물 염색 공정만 거 친 경우 원 산지 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96	6004.90 -0000	메리야스 편 물이나 뜨개 질 편물 (폭이 30cm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고 무사의 함유 중량이 전중 량의 100분 의 5 이상인 것)	한 가닥의 실로 루프 를 형성하여 만든 메 리야스 편물이나 뜨개 질 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 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 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천연사 또는 인조 섬유사를 편직하 여 생산 - 원사는 역외산 가능	식물 염색 공정만 거 친 경우 원 산지 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97	6005.35 -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직물류 (염 색한 것) (중량이 1제 곱미터당 30 그램 이상 55그램 이하 이며 메시 (mesh)의 크 기가 1제곱 센티미터당 20홀 이상 100홀 이하 인 폴리에틸 렌 모노필라 멘트 또는 폴리에스테 르 멀티필라 멘트로 된 직물)	합성섬유사(최대중량) 를 세로방향으로 공급 하여 고리끼리 연결하 는 사다리 꿰매기형의 경편직물(warp knit fabrics)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 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 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합성섬유사 등을 제직하여 직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 나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생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 화 대상에 서 제외
98	6006.22	면으로 만든	면사(최대중량)를 한	한-아세안 FTA,	면사 등을 편직하	염색공정만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염색한 것)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베트남 FTA	여 편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하여 생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99	6006.23-0000	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서로 다른 색실의 것)	면사(최대중량)를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서로 다른 색의 면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어 생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100	6006.24-0000	면으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날염한 것)	면사(최대중량)를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면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어 생산하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101	6006.3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염색한 것)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 한 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합성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dyeing)하여 생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102	6006.34-0000	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날염한 것)	합성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합성섬유사 등을 편직기계를 이용해 직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03	6006.42-0000	재생·반(半)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염색한 것)	재생·반합성 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재생·반합성 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염색(dyeing)하여 생산	염색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04	6006.44-0000	재생·반(半)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날염한 것)	재생·반합성 섬유사(최대중량)를 한가닥의 실로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재생·반합성 섬유사 등을 편직하여 편물을 만들고 이에 염료나 안료 등으로 날염(printing)하여 생산 - 원사는 역외산 사용 가능	날염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05	6006.90-0000	그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	기타 재질(양모, 면, 합성섬유, 재생섬유 제외)를 한가닥의 실로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기타 재질(양모, 면, 합성 섬유, 재생섬유제외)의 사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물 (기타의 것)	루프를 형성하여 만든 메리야스편물이나 뜨 개질 편물  <제외대상> - 파일편물(제6001 호) - 폭이 30cm 이하의 것 - 탄성사, 고무사 함 량이 5% 미만 - 제품형상으로 만든 것		를 편직하여 편물 을 생산 -원사는 역외산 사용가능	
106	6116.10 -0000	메리야스편 물이나 뜨개 질 편물로 만든 장갑류 (플라스틱이 나 고무로 침투시키거 나 도포하거 나 피복한 것)	편물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장갑으로 겉면을 도포된 것  <제외대상> - 모피나 인조모피 재질(제43류) - 유아용 장갑(제 6111호) - 편물제가 아닌 것 (제6216호) - 마사지, 화장용 마 찰장갑(제6302호)	한-중 FTA, 한-인도 CEPA	면사 등을 편직기 계를 이용해 편성 후 장갑을 만들고 표면에 플라스틱 이나 고무 등으로 도포하여 생산	장갑을 공 급받아 플 라스틱 또 는 고무로 도포 침투 시키는 공 정만 거친 경우 간소 화 발급대 상에서 제 외
107	6309.00 -0000	중고 의류	사용한 흔적이 명확한 의류나 의류의 부속품 (예 : 스카프, 장갑 등), 가정용 실내용품 (예 : 커튼, 테이블보 등)  <제외대상> - 양탄자, 바닥깔개 (제5701~5703호) - 매트리스나 누비이 불 등(제9404호) - 방수포나 텐트 등 (제6306호) - 석면 재질의 것(제 6812호)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국내에서 수집된 것	외국에서 수입한 중 고 의류는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108	7006.00 -4000	가공한 유리 시트 (액정 디스 플레이용)	제7003호~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 처리한 유리  <제외대상> - 유리에 다른 재료 (목재· 금속 등)가 결 합된 제품(예: 사진 틀, 문자판) - 안전유리(제7007 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003호·제7004 호·제7005호의 유 리를 주요 원재료 로 다음의 가공 중 하나 이상을 거친 경우 1.평면유리판을 고 온 굽힘이나 고온 곡면한 것 2.가장자리를 가공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제 복층절연유닛(제7008호)</li> <li>-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 등</li> </ul>		<p>한 유리[연마한것·광택을 낸 것·둥글게한 것·노치한 것(notched)·모따기한 것(chamfered)·사각지게 한 것(bevelled)·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p> <p>3. 천공(穿孔)하거나 홈이 파진 공정</p> <p>4.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시 : 불투명 처리, 에나멜을 칠한 유리, 무늬·장식·여러 연속 도안장식된 유리)</p>	
109	7113.19-2000	귀금속제 신변장식품(금으로 만든 것)	<p>귀금속(금, 은, 백금)으로 만든 신변장식품</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li> <li>-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li> <li>- 모조 신변장식품(제7117호)</li> <li>-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li> <li>-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li> </ul>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제7108호의 금 등을 주요 원재료로 용융, 주조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다이아몬드, 큐빅, 은, 백금 등이 함께 사용될 수 있음)	
110	7114.19-1000	귀금속으로 만든 식탁용품(은 또는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으로 만든 것은 제외)	<p>귀금속으로 만든 식탁용품</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li> <li>-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li> <li>- 모조 신변장식품(제7117호)</li> <li>-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li> <li>-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li> </ul> <p>* 귀금속을 도금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제7114.20</p>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은 이외의 귀금속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호에 분류			
111	7114.19 -9000	귀금속으로 만든 기타 제품 (은 또는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으로 만든 것은 제외)	귀금속으로 만든 기타의 것(예: 종교용품 등)  <제외대상> -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 제96류(예: 만년필)의 일부분 -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 귀금속 함량이 미미한 경우(예: 테두리) - 귀금속제 손목시계줄(제9113호) * 귀금속을 도금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하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제7114.20호에 분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은 이외의 귀금속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12	7202.11 -0000	페로망간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Mn-Fe 합금철로 망간강, 강의 탈산에 사용  <제외대상> -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 탄화규소(제2825호, 제2849호 등) - 페로세륨, 발화성 철합금(제3606호) - 유사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중FTA,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한-인도CEP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2602호)이나 망간청동(제2603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13	7202.19 -0000	페로망간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	Mn-Fe 합금철로 망간강, 강의 탈산에 사용  <제외대상> - 산화몰리브데늄, 칼슘몰리브데이트, 탄화규소(제2825호, 제2849호 등) - 페로세륨, 발화성 철합금(제3606호) - 유사품명이더라도 기타 철강 야금에 탈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서 망간광(제2602호)이나 망간청동(제2603호)을 주요 원재료로 생산	
114	7204.21 -0000	스테인리스 강의 웨이스트(waste)와	철강제조나 고철제품 제작작업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스테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국내 제조과정 발생한 부스러기를 수집되었거나 수	외국에서 수입한 스크랩·부스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스 크 랩 (scrap), 재 용해용 스크 랩 잉곳 ( s c r a p ingot)	리스강의 부스러기나 이를 용융한 잉곳  <제외대상> - 원료가 아닌 보수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예: 기둥, 선로 등) -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슬래그, 드로스, 스케일링과 웨이스트(제2619호) - 선철, 스피그라이즌 조각(제7201호) -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철강 웨이스트(제2844호)		집한 폐기물 등을 분해하여 리사이클링 기계 등을 이용해 스크랩 등을 선별	러기는 원 산 지 증 명 간소화 발 급대상에서 제외
115	7208.25-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 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16	7208.25-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117	7208.26-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18	7208.26-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 플라스틱 수지(예:</li> </ul>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제 외 한 다 .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 파스칼 이상 인 것은 제 외)]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 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 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7216 호) - 익스펜디드 메탈 (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 리 등은 허용			
119	7208.27 -1000	철이나 비합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 로 한정하 고, 클래드 (clad)·도금· 도포한 것은 제 외 한 다 . 폭이 600밀리 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 미터 미만 인 것(인장 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 강의 소재를 열간 압 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 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 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7216 호) - 익스펜디드 메탈 (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 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 의 일차제품(제 7206)·반제품(제 7207호) 또는 웨이 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 間)압연하여 생산	
120	7208.27 -9000	철이나 비합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 로 한정하고 클래드 (clad)·도금·	두개의회전하는롤사 이에철이나비합금강의소 재를 열간(熱間)압연 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 의 일차제품(제 7206)·반제품(제 7207호) 또는 웨이 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 間)압연하여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121	7208.36-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2	7208.36-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고, 클래드 (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 (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間)압연하여 생산	
123	7208.37-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 (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 (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 (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4	7208.37-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 (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p>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5	7208.38-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熱間)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6	7208.38-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p>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7	7208.39-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8	7208.39-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29	7208.51-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열간 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0	7208.51-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p>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1	7208.52-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p>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li> <li>-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li> <li>-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li> <li>-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li> <li>-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li> <li>-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li> <li>-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li> </ul> <p>*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p>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2	7208.52-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3	7208.54-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4	7208.54	철이나 비합	두 개의 회전하는 롤	한-아세안 FTA,	철이나 비합금강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9000	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열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인도 CEPA	의 일차제품(제7206)·반제품(제7207호)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사용하여 열간(熱間)압연하여 생산	
135	7209.16 -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136	7209.16 -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 환원)을 거쳐 생산	
137	7209.17 -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 환원)을 거쳐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리 등은 허용			
138	7209.17 -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39	7209.18 -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40	7209.18 -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41	7209.27 -1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142	7209.27-900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냉간 압연(냉간 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외)]	두 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소재를 냉간압연하여 만든 판재  <제외대상> - 금속으로 표면을 도포, 도금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연마 같은 단순 표면처리 외 가공한 것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압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나 금속의 성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면처리 등은 허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반제품(제7207호)·판(제7208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압연(냉간환원)을 거쳐 생산	
143	7210.12-0000	주석을 도금·도포한 평판 압연 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하고,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평판 압연 제품에 주석 피막을 입힌 것  <제외대상> - 단순한 화학적 표면처리나 크론산 염 처리를 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제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 압연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주석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평판 압연 제품(제7208호·제7209호)의 표면을 세척, 소둔 후 용융된 주석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144	7210.49-1010	아연을 도금·도포한	평판 압연 제품에 아연 피막을 입힌 것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평판압연 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하고,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제외대상> - 단순한 화학적 표면처리나 크론산 염처리를 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한-인도 CEPA	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아연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을 표면세척, 소둔 후 용융된 아연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145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하고,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평판압연제품에 알루미늄·아연피막을 입힌 것  <제외대상> - 단순한 화학적 표면처리나 크론산 염처리를 한 것 - 플라스틱 수지(예: 에나멜)로 도포한 것 - 귀금속으로 피복된 것(제71류) - 평판형상 외 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 - 각이 있는 립드(ribbed) 제품(제7216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314호) - 반가공된 비금속 블랭크(제82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철이나 비합금강의 일차제품(제7206호), 반제품(7207호), 웨이스트나 스크랩(제7204호) 등을 통해 평판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용융된 알루미늄 도금 욕조에 담가 피막을 입혀 생산하거나, 또는 평판압연제품(제7208호·제7209호)을 표면세척, 소둔 후 용융된 알루미늄 도금 욕조 등에 담가 피막을 입히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면을 도금, 클래딩 처리하여 생산	
146	7216.33-4000	H형강 (높이가300밀리미터이상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횡단면이 균일한 H형상의 긴 강철  <제외대상> - 철강 구조물의 구성부품(제7308호) - 철도 레일용의 받침목이나 좌철 등(제73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정련, 주조,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	중간 제품(Beam Blank)을 공급받아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은 간소화발급 대상에서 제외
147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상온(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압연방법으로	한-중 FTA, 한-인도 CEPA,	제7205~7208호 또는 제7214호, 제	제7225호를 공급받아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더 가공하지 않은 그 밖의 평판압연제품 (폭인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생산된 평판(시트, 판, 스트립 등) 모양의 철강제품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7218호, 제7224호 등 반제품이나 일차제품을 원료를 압연하여 생산	단순 표면처리 시 원산지 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48	7227.90-9090	그 밖의 합금강의 봉 (고속도강, 실리코망간강, 내열강, 봉소의 함유량이 100분의 0.0008 이상인 것) 제외한다 [열간(熱間) 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불규칙하게 감아 놓은 코일 형상의 열간압연 합금강의 봉*  *제72류 주1(카)규정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05~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7226호 등의 반제품이나 일차제품 형상을 원료로 제강 또는 압연공정 등을 통해 생산	
149	7306.50-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관 및 중공 프로파일 (기타의 것)[(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의 합금강*으로 용접하여 만든 봉이나 관  *제15부 주5 및 제72류 주1(바)규정 참조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를 주요 원재료로 성형공정, 용접공정을 거쳐 생산  제7205~7208호 또는 제7214호, 제7218호, 제7224호~7226호 등의 반제품이나 일차제품 형상을 원료로 제강 또는 압연공정 등을 통해 생산	
150	7307.91-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플랜지 (flange)	관의 이음새 부분에 사용되는 철강제 플랜지  <제외대상> -제7308호, 제8481호, 제8547호, 제8714호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강을 주요 원재료로 플랜지 몸체를 단조공정 또는 절단공정을 통해 플랜지 몸체를 만드는 공정을 거쳐 생산	플랜지 반제품을 공급받아 드릴링, 마킹공정 또는 간단한 공정만을 거쳐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51	7307.93-0000	철강제품 (바트(butt))	관 등을 연결하기 위한 바트 용접용 철강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제72류 철강을 원재료로 성형 또는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용접용 연결구)	제품  <제외대상> - 관을 벽에 지지하거나 고정하기 위한 행거, 피스, 조임용 밴드 등(제7325호 등) - 철강재 구조물로 특별히 설계된 것 - 탭, 콕, 밸브 등을 결합된 것(제8481호)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의 프레임 조립용의 것(제8714호) - 온도조절식 익스팬션 조인트(제8307호)	한-베트남 FTA	단조 공정을 거쳐 생산	
152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는 상관없음)	철강재료의 탱크(용도 불문)  <제외대상> - 운송수단에 탑재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제8609호) - 가열이나 냉각용의 통(제8480호) - 철도 레일용의 받침목이나 좌철 등(제73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설계, 원재료 가공, 원재료 결합(용접) 공정을 거쳐 생산	
153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 300리터 이하인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운반이나 포장 목적의 철강용기(50ℓ~300ℓ)  <제외대상> 컨테이너(제8609호) 및 제4202호, 제9617호, 제7323호, 제7325호, 제7326호, 제8303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철강을 원재료로 구조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하며, 내장 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54	7318.15 -2000	볼트(bolt)	철강제 볼트  <제외대상> - 스크루 네일(제 7317호) - 나사식의 캡, 마개 (제8309호) -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 92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단조한 봉(제7214 호), 철이나 비합 금강의 선(線)(제 7217호), 기타 합 금선(제7229호) 등 의 제72류 해당 품목을 주요 원재 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볼트 반제품 및 블랭크를 공급받아 전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155	7318.15 -3000	볼트(bolt)· 너트(nut) (세트로 된 것)	<제외대상> - 스크루 네일(제 7317호) - 나사식의 캡, 마개 (제8309호) -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 92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단조한 봉(제7214 호), 철이나 비합 금강의 선(線)(제 7217호), 기타 합 금선(제7229호) 등 의 제72류 해당 품목을 주요 원재 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볼트·너트 반제품 및 블랭크를 공급받아 전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156	7318.16 -0000	너트(nut)	철강제 너트  <제외대상> - 스크루 네일(제 7317호) - 나사식의 캡, 마개 (제8309호) -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 92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단조한 봉(제7214 호), 철이나 비합 금강의 선(線)(제 7217호), 기타 합 금선(제7229호) 등 의 제72류 해당 품목을 주요 원재 료로 단조, 전조 공정을 거쳐 생산	너트 반제품 및 블랭크를 공급받아 전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157	7326.90 -9000	철강으로 만 든 그밖의 제품	기타의 철강제품  <제외대상> - 철강제 주물제품 (제7325호) - 철강제 탱크(제 7309호,제7310호) - 피아노 등 악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제 9209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2류 및 제73류 (제7326 제외)를 주요 원재료로 단 조 또는 펀칭, 절 단이나 스탬핑 또 는 접음·조립· 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 등을 거쳐 생산	
158	7409.11 -9000	정제한 구리 로 만든 구 리의 판·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놓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402호 구리 또 는 제7403호의 구 리를 주요 원재료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트(sheet)·스트립 [코일 모양으로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반도체 제조용 제외)]	은 것  *제74류 주1호(가) 참조		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159	7409.21-9000	구리-아연합금(황동)으로 만든 관·시트(sheet)·스트립 [코일 모양으로 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	구리-아연합금*으로 만든 시트나 스트립 등을 코일 모양으로 감아 놓은 것  *제74류 소호주1(가) 참조  <제외대상> 두께가 0.15mm 이하인 것(제7410호), 전기 절연한 것(제8544호) 등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403호의 구리-아연 합금을 주요 원재료로 냉간 또는 열간 압연하여 생산	
160	7410.11-0000	정제한 구리의 박(뒷면을 보강하지 않은 것)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뒷면을 보강재로 결합하지 않은 것)  *제74류 주1호(가) 참조  <제외대상> 두께가 0.15mm 초과한 것(제7409호), 레이블(제4911호) 등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구리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구리관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주조, 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생산	
161	7411.10-0000	구리관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제외대상> - 중공 프로파일(제7407호) - 관 연결구(제7412호) - 플렉시블 튜빙(제8307호) - 특별히 기계의 부분품 형태로 제작된 것(제16부)  * '정제한 구리'의 정의는 제74류 주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일차 제품의 구리 또는 스크랩, 전기 동 등을 용해, 주조, 압출, 인발, 절단, 표면 처리하여 관을 만들고 전기 분해 등을 통해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	동 관 (제7411호)을 공급 받아 인발공정만 거쳐 생산한 물품은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62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 (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	두 줄 이상의 구리선을 꼬아서 하나의 도선으로 만든 것	한-중 FTA	반제품 형상의 구리를 용해하여 일정 굵기로 압출한 후 꼬아주는 공정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의한다)	<제외사항> 전기절연전선(제8544호)		을 통해 생산	
163	7502.10-9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의괴(기타)	<제외대상> - 니켈 가루와 플레이크(제7504호) - 전기도금용 니켈양극(제7508호)  *‘니켈합금’의 정의는 제75류 소호주1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니켈광(제2604호) 또는 중간생산물(제7501호로부터 생산)	
164	7502.20-0000	니켈 합금괴	니켈-합금*의 잉곳이나 큐브 등의 형상  *제75류 소호주1(나) 참조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니켈광(제2604호) 또는 중간 생산물(제7501호)로부터 생산  제7503호(웨이스트)원재료로 사용 가능	
165	7601.20-1000	합금알루미늄괴 [캐스팅얼로이(castingalloy)]	<제외대상> - 알루미늄 가루와 플레이크(제7603호) - 알루미늄을 소결하여 얻어진 서멧(제8113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스크랩(제7602호), 알루미늄 코일(제7606.92호) 등을 원재료로 합금(용해, 주조) 공정을 통해 생산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제7601.10호)을 재료로 생산시 간소화 발급대상에서 제외
166	7604.21-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프로파일  *제76류 주1(나) 및 소호주 1(나) 참조  <제외대상> - 구조물(다리, 탑, 지붕 등)용으로 가공한 것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7601호를 주요 원재료로 압출하여 생산  반제품 형상의 알루미늄을 압출, 인발, 주조, 단조하여 생산하거나 빌렛 등을 절삭가공한 후 표면처리 등을 통해 생산	
167	7606.12-0000	알루미늄의판·시트(sheet)·스트립[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인 것)]	<제외대상> - 두께 0.2mm 이하인 것(제7607호) - 익스펜디드 메탈(제7616호) - 두께가 폭의 1/10 초과한 것  *‘알루미늄합금’의 정의는 제76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가열하여 롤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	알루미늄 판·시트·스트립에 플라스틱 필름 합지 또는 도포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168	7606.92 -0000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인 것은 제외)]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께 0.2mm 이하인 것(제7607호)</li> <li>- 익스펜디드 메탈(제7616호)</li> <li>- 두께가 폭의 1/10 초과한 것</li> </ul> <p>*'알루미늄합금'의 정의는 제76류 소호주 제1호 참조</p>	<p>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p>	<p>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p>	<p>제7606호의 해당하는 원재료로 플라스틱 합지 공정만 거치는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p>
169	7607.11 -9000	뒷면을 보강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箔)[보강재 두께는 제외하고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탬프용 박(제3212호)</li> <li>- 식품 밀봉용으로 종이(본질적 특성)에 결합된 알루미늄 박(제4811호)</li> <li>- 인쇄된 알루미늄 레이블(제4911호)</li> <li>- 크리스마스 트리용 박(제9505호)</li> <li>- 두께가 0.2mm 초과한 것(제7606호)</li> </ul>	<p>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p>	<p>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알루미늄 판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여 생산</p>	
170	7607.20 -9000	뒷면을 보강한 알루미늄의 박(箔) [보강재 두께는 제외하고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	<p>종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뒷면을 보강한 알루미늄의 박(箔)</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탬프용 박(제3212호)</li> <li>- 식품 밀봉용으로 종이(본질적 특성)에 결합된 알루미늄 박(제4811호)</li> <li>- 인쇄된 알루미늄 레이블(제4911호)</li> <li>- 크리스마스 트리용 박(제9505호)</li> <li>- 두께가 0.2mm 초과한 것(제7606호)</li> </ul>	<p>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p>	<p>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 또는 알루미늄 판이나 스트립(제7606호) 등을 가열하여 로울 사이에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로 압연하거나,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냉간압연하는 방법으로 생산</p>	
171	7610.90 -9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품	<p>알루미늄재료의 구조물(건물, 탑, 다리 등)을 구성하는 부품</p>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구조물(제89</li> </ul>	<p>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p>	<p>알루미늄 일차제품(괴,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플레이크 등)을 성형하여 주조하거나 붓이나 판, 판재</p>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류) - 조립식 건축물(제9406호) - 제16부(기계)·제17부(수송기기)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		등을 절단, 가공하여 생산	
172	7801.10-1000	납의 피 (정제한 것으로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제외대상> - 가루와 플레이크 (제7804호) * '정제한 납'의 정의는 제78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천연의 황화납인 연정광(방연광)을 제련하거나 납 웨이스트나 스크랩 (예: 폐전지 등) 등을 분리, 환원, 주조 등 재용해하여 생산	7801.91 또는 7801.99 호의 납에서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73	7801.10-9000	납의 피 (정제한 것으로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	<제외대상> - 가루와 플레이크 (제7804호) * '정제한 납'의 정의는 제78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천연의 황화납인 연정광(방연광)을 제련하거나 납 웨이스트나 스크랩 (예: 폐전지 등) 등을 분리, 환원, 주조 등 재용해하여 생산	7801.91 또는 7801.99 호의 납에서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74	7801.99-2090	납의 피 (기타의 것으로 정제한 것은 제외)	<제외대상> - 가루와 플레이크 (제7804호) * '정제한 납'의 정의는 제78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황화납인 연정광(방연광)을 제련하거나 납스크랩 등을 전기로에 녹여 주형에 흘려 굳혀서 생산	제7801호의 납을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75	7901.11-0000	아연의 피 (합금하지 않은 것으로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제외대상> - 가루와 플레이크 (제7903호) * '합금하지 않은 아연'의 정의는 제79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아연광을 제련하거나 아연 스크랩 등을 전기로에 녹여, 주형에 흘려 굳혀서 생산	아연피(제7901.12호)를 사용하여 순도만 높이는 공정만 거친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76	7901.12-0000	아연의 피 (합금하지 않은 것으로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제외대상> - 가루와 플레이크 (제7903호) * '합금하지 않은 아연'의 정의는 제79류 소호주 제1호 참조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아연광을 제련하거나 아연 스크랩 등을 전기로에 녹여 주형에 흘려 굳혀서 생산	
177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	<제외대상> - 원료가 아닌 보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국내 아연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아	외국에서 수입한 스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와 스크랩 (scrap)	<p>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예: 기둥, 선로 등)</p> <p>- 아연 제조 시 생기는 슬래그, 회, 전기도금 시 침전된 슬러지나 금속 잔재물(제 2620호)</p> <p>- 아연 웨이스트를 재용해하여 덩어리 형태로 주조한 것(제 7901호)</p>	한-인도 CEPA	연 부스러기를 수집하거나,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에서 기계를 이용해 아연을 선별 분리	크랩·부스러기는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78	7904.00-3000	아연 선(線)	<p>&lt;제외대상&gt;</p> <p>- 용제물질이 도포된 것(제8311호)</p> <p>* '선'의 정의는 제79류 주 제1호 참조</p>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황화광(아연광)이나 탄산염광 등을 열환원, 전해법 등을 통해 추출하거나 아연의 피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생산	
179	8302.10-0000	경첩	창문이나 가구의 문짝을 여닫는 연결부위에 회전축의 역할을 하는 비금속제 부착구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15부 비금속(非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으로 주조하여 생산	
180	8302.30-0000	비(卑)금속제 차량용 부착구	<p>차량에 사용되는 비금속제* 범용성 부착구(예: 손잡이, 봉, 브레이크 등)</p> <p>*제15부 주3 참조</p>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15부 비금속(非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으로 주조하여 생산	다만 단순조립, 도색, 광택 등의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81	8302.42-0000	비(卑)금속제 가구 부착구	<p>가구에 사용되는 비금속제* 범용성 부착구(예: 문고리, 꺾쇠, 파스너 등)</p> <p>*제15부 주3 참조</p>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제15부 비금속(非金屬) 재료를 다이캐스팅 등으로 주조하여 생산	다만 단순조립, 도색, 광택 등의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82	8403.10-1000	보일러(유류를 사용하는 것)	유류를 연료로 증양에서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장치	한-중 FTA	열교환기, 버너, 펌프, 모터, 외피, 화실 등을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183	8403.10-3000	보일러(가스를 사용하는 것)	가스 연료로 증양에서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장치	한-중 FTA	열교환기, 버너, 펌프, 모터, 외피, 화실 등을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184	8412.21-1000	액압실린더	유압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한-중 FTA	제72류 철강 및 제73류 철강제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장치  <제외대상> - 유압식의 자동도어 개폐기(제8302호) - 차량용 서스펜션 쇼업쇼바(제8708호)		을 주요 원재료로 전장가공, 내경가 공, 용접, 세척, 검 사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	
185	8413.30 -4000	액체펌프 [제 87 류 에 해당하는 차 량 용 ( 연 료 · 운활유 급유 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 프)]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 펌프, 엔진오일펌프, 냉각수펌프  <제외대상> - 액체용의 살포기, 분사기(제8424호) - 수동식의 그리스 건(제8205호) - 압축공기식의 그리 스 건(제8467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연료펌프는 바디, 플런저, 플런저 스 프링, 푸시로드, 체크밸브 등으로 구성, 워터펌프는 임펠러, PULLEY, 베어링, 고무씰 등 으로 구성, 오일펌 프는 구동로터와 폴리, 기어 등으로 구성	
186	8413.30 -9000	연료·운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 으로 한정하 다.(항공기, 기관차용, 선박용, 자 동차용 제 외)]	엔진(내연기관)의 기 계적 운동을 압력으로 바꾸는 피스톤형 액체 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각 요소 조립공정 을 거쳐 생산  로터, 스타터, 샤프 트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187	8413.81 -9000	기타 펌프 (수영장용 펌프는 제 외)	액체를 압축해서 이송 하는 기타의 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각 요소 조립공정 을 거쳐 생산  로터, 스타터, 샤프 트, 임펠러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188	8414.30 -100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 기(사용동력 이 11킬로와 트 미만인 것)	냉장, 냉동고 등에 사 용되는 기체용 압축기 (11킬로와트 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각 요소 조립공정 을 거쳐 생산  로터, 스타터, 샤프 트, 임펠러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189	8414.59 -9000	기타의 팬 (출력 125와 트 이하의 전동기를 갖 춘 테이블 용·바닥 용·벽용· 창용·천장 용·지붕용	날개를 통해 공기를 배출하여 환기하거나 열을 식히는 장치  - 출력 125와트 이하 의 전동기를 갖춘 테 이블용·바닥용·벽 용·창용·천장용· 지붕용 팬은 제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플라스틱사출 또 는 비금속제 주물 공정 등을 통해 생산된 팬에 모 터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반 제품을 공 급받아 생 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팬과 항공기 용, 그리고 자동자료처 리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는 것은 제 외한다)	8414.51호에 분류			외  -반제품 으 로서 통칙 2(가)에 따 라 완제품 의 본질적 인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품 세 번에 분류
190	8414.80 -1000	후드(수평면 의 최대길이 가 120센티 미터를 초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체(연기, 냄새)를 흡 입하여 배출하는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임펠러, 모터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반 제품을 공 급받아 생 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반제품 으 로서 통칙 2(가)에 따 라 완제품 의 본질적 인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품 세 번에 분류
191	8414.80 -9190	그 밖의 기 체 펌프(항 공기용 제 외)	제8414.10호~제8414.30 호를 제외한 그 밖의 기체펌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용기, 구동모터, 제어반, 압력계, 밸브 등을 조립하 여 생산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반 제품을 공 급받아 생 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반제품 으 로서 통칙 2(가)에 따 라 완제품 의 본질적 인 특성을 갖춘 것은 완성품 세 번에 분류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192	8414.80-9210	기체 압축기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 (74.6킬로와트 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용기, 구동모터, 제어반, 압력계, 밸브 등을 조립하여 생산  -실린더, 피스톤, 밸브, 탱크 또는 임펠러, 디퓨저, 샤프트, 스크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93	8414.80-9220	그 밖의 기체 압축기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 (74.6킬로와트 이상~373킬로와트 미만)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실린더, 피스톤, 밸브, 탱크 또는 임펠러, 디퓨저, 샤프트, 스크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94	8414.80-9230	그 밖의 기체 압축기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가스나 공기 압력을 높이는 장치로 압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 (373킬로와트 이상)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실린더, 피스톤, 밸브, 탱크 또는 임펠러, 디퓨저, 샤프트, 스크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95	8414.80-9900	기타의 팬·후드 등	제 8 4 1 4 . 1 0 호~8414.80-9230호의 물품을 제외한 기타의 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용기, 구동모터, 제어반, 압력계, 밸브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196	8415.10-2010	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공기의 조화(냉방, 난방, 제습, 청정)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조합시킨 장치로, 벽에 고정하는 형태  <제외대상> -제7322호, 제8516호, 제8479호, 제8418호 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온도조절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소화 대상 에서 제외
197	8415.10 -2020	공기조절기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실내 온도와 습도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  <제외대상> - 철강으로 만든 비 전기식의 방열기나 온풍 배분기(제7322 호) - 전기식(히터) 라디 에이터, 전기식(히터) 난방기(제8516호) - 가습기나 제습기 (제8479호) - 공기조절용 냉각기 (제8418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온도조절장 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198	8415.10 -9020	공기조절기 (창형·벽형 제외)(사용 동력이 11킬 로와트 이상 인 것)	공기의 조화(냉방, 난 방, 제습, 청정)를 위 해 필요한 기능을 조 합시킨 장치로 벽이나 창 이외의 곳에 고정 하는 형태  <제외대상> 제7322호, 제8516호, 제8479호, 제8418호 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온도조절장 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주요 완제 품 형태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 는 반제품 을 공급 받 아 생산할 경우 원산 지증명 간 소화 대상 에서 제외
199	8417.10 -2010	철강 처리용 노나 오븐 [배소(焙燒) 용·용해용이 나 그 밖의 열 처리용으 로 한정한다	철강제조에 사용되는 용해로나 소둔로 등 의 노(爐)나 오븐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예열로 제작, 본체 제작, 소입유조 제 작 등을 통해 생 산	주요 완제 품 형태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 는 반제품 을 공급 받 아 생산할 경우 원산 지증명 간 소화 대상 에서 제외
200	8418.10 -1030	냉장고 등 (용량이 400 리터를 초과 하는것)	식품이나 약품 등을 저온에서 보관하기 위 한 장치  <제외대상> - 한제(freezing salt) 용 냉동고(제8479호) - 열교환 방식(water flow)의 냉각기 (제 8419호)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팬, 모터, 몸체, 도어, 내부 선반, 온도조절장 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201	8419.40 -0000	증류기나 정 류기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 하여 혼합 액체를 증 류시켜 비교적 순수한 것을 얻는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탱크나 증류탑 (column), 이송관 등의 구조물을 만 들고 유량계나 벨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반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브, 펌프 등을 조립하여 생산	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2	8419.50-9000	열교환기(항공기용,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제외)	금속판 전열벽 등을 통해 높은 온도의 유체로부터 낮은 온도의 유체에 열을 전달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프레임, 열교환부(관,코일 등), 커버 등의 구성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3	8420.10-900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 제지용, 직물용, 가죽용, 고무용·플라스틱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용은 제외한다)	얇은 시트 형상의 종이나 섬유, 가죽, 플라스틱의 표면을 마무리하거나 매끄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압롤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품인 실린더, 부분품을 조립하여 생산  - 경우에 따라 냉각이나 가열장치가 결합될 수 있음.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04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필터)	차량의 내연기관용 오일 또는 연료 필터를 위한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 또는 플라스틱 몸체 및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제4812호)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방직용 섬유·펠트 등)는 구성재료 등을 원재료로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필터 엘리먼트에 단순히 보강판이나 캡 등을 씌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는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 원산 지증명 간 소화 대상 에서 제외
205	8422.20 -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노즐 등을 통해 병이 나 탱크, 식기 등을 세 정하거나 건조용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요 구성품을 가 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반 제품을 공 급 받아 생 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206	8422.30 -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합용·봉지 용 기계	병이나 용기의 틈, 구 멍을 봉하여 붙이는 거나, 뚜껑을 잠그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이송부, 배출부 등 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반 제품을 공 급 받아 생 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207	8422.30 -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 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인쇄된 상표 등을 용 기에 부착하거나 병 입구(예: 와인) 등에 호일 등으로 캡슐링하 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 품을 가공 조립하 여 생산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반 제품을 공 급 받아 생 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208	8422.40 -4000	열수축 포장 기계	열가소성 필름(PP,PE 등)을 이용해 제품을 포장하고, 열을 가해 표면에 밀착시키는 기 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 품을 가공 조립하 여 생산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반 제품을 공 급 받아 생 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209	8422.40 -9010	자동 포장 기 계	자동으로 제품(예: 식 품, 음료, 약품, 화장품 등)을 포장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 품을 가공 조립하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여 생산	수 있는 반 제품을 공 급 받아 생 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210	8422.40 -9020	자동결속기	자동으로 제품(예: 목재, 시트, 박스 등)을 끈 등으로 묶어주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1	8422.40 -9030	진공포장기	다양한 제품(예: 식품, 약품, 공업부품, 반도체 등)을 진공상태로 포장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투입구, 작업부, 배출부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2	8424.10 -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불을 끄기 위해 소화약제(인산암모늄 등)나 가스(CO <sub>2</sub> )를 압력 용기에 넣은 것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노즐, 손잡이, 밸브, 용기, 캡 등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3	8438.20 -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각종 제과 공정(반죽, 성형, 발효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제외대상> 가정용 또는 포장용(주입), 제분용, 오븐, 여과기 등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주물 등의 공정을 통해 성형기나 반죽기 등의 구성품을 가공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4	8474.80	조괴기(造塊)	주형틀을 이용해 일정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완제품 형태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2000	機)·형입기 와 성형기	한 모양*을 만드는 기계  *재료 : 가루나 페이스트 형상의 세라믹, 석고, 시멘트 등 광물성 생산품  <제외대상> -금속, 유리, 플라스틱 성형기(제8480호, 제8475호, 제8477호) -도자기, 콘크리트 등 공작기계(제8464호) -범용성프레스(제8479호)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	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15	8477.20 -2000	압출기(플라스틱 공업용)	예열된 재료*를 좁은 구멍에 밀어서 뽑아내는 방법으로 성형하는 기계  *재료 : 플라스틱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에서 제외
216	8477.40 -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진공상태에서 재료 *(예 : 관)를 형틀에 눌러서 성형하는 기계 -사출성형기와 압출 기를 제외한 기타 열 성형기 *재료 : 플라스틱, 고무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에서 제외
217	8477.80 -0000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성형기 나 압출기를 제외한다)	진공·사출성형기, 압출 기, 그외 열성형기, 이 너튜브 성형기 등을 제외한 기타의 플라스틱· 고무 가공용 기계	한-중 FTA	투입구(호퍼 등), 작업부(금형), 히터, 이송부(스크류, 벨트 등), 동력부(모터, 실린더 등), 제어반 등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 에서 제외
218	8479.81 -3000	권선기	전기 케이블이나 금속 케이블을 보빈 등에 감는 장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전 기 모 터 ( 제 8501.40호), 센서 (제8538.90호), 부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분품(제8479.90호) 등을 주요 원재료로 각 파트 및 완제품 조립공정을 거쳐 생산	
219	8479.82-1000	혼합기	둘 이상의 물질을 물리적 힘을 이용해 혼합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유압시스템, 믹싱, 플랫폼, 탱크 등의 주요 구성품을 조립하여 완성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0	8479.82-4000	교반기	둘 이상의 물질을 물리적 힘으로 휘저어 균일한 상태로 혼합하는 기계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유압시스템, 교반, 플랫폼, 탱크 등으로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1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유압장치에서 오일의 압력이나 유량, 흐름 등을 제어하는 밸브  <제외대상> - 내연기관용 흡입/배기밸브(제8409호) - 증기기관용 슬라이드 밸브(제8434호)	한-중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밸브 몸체부분 등을 만들거나, 이러한 밸브 부분품에 가스킷, 스프링 등을 조립하여 생산	
222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공압장치에서 공기압력이나 유량, 흐름 등을 제어하는 밸브  <제외대상> - 내연기관용 흡입/배기밸브(제8409호) - 증기기관용 슬라이드 밸브(제8434호)	한-중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밸브 몸체부분 등을 만들거나, 이러한 밸브 부분품에 가스킷, 스프링 등을 조립하여 생산	
223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배관에 설치되어 유체의 역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한-중 FTA	몸체, 커버, 가이드, 디스크, 고정장치, 개스킷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4	8481.40-0000	안전밸브	압력 배관에 설치되어 일정 압력 이상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	한-중 FTA	몸체, 커버, 스프링, 개스킷, 디스크, 고정장치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5	8481.80-1010	밸브(전기 작동식의 것)	감압·체크·안전밸브 및 유압·공압 전송용 밸브를 제외한 기타의 전기작동 밸브	한-중 FTA	바디, 플랜지, 코일, 스프링, 디스크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6	8481.80-1030	밸브(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감압·체크·안전밸브 및 유압·공압 전송용 밸브를 제외한 기타의 자동제어 밸브	한-중 FTA	바디, 플랜지, 코일, 스프링, 디스크 등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7	8481.80-2000	탭·코크와 트랩	배관에 설치되어 유로의 개폐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	한-중 FTA	플라스틱 사출 또는 비금속재 주물 공정 등을 통해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28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외륜과 내륜 사이에 볼을 넣어 윤활 효과를 내는 장치  <제외대상> ·베어링과 하우스링이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을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결합된 것(제8483호) ·자전거용 허브(제8714호)			
229	8482.10-9000	볼 베어링 (내경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제외)	회전이나 왕복운동을 하는 축에 결합되어 기계부품의 마찰을 줄여주는 장치 -전동체:볼  <제외대상> ·베어링과 하우징이 결합된 것(제8483호) ·자전거용허브(제8714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30	8482.20-0000	원추형 롤러 베어링 (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 베어링 (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회전이나 왕복운동을 하는 축에 결합 되어 기계 부품의 마찰을 줄여 주는장치 -전동체 : 원추형 롤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31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회전이나 왕복운동을 하는 축에 결합 되어 기계 부품의 마찰을 줄여 주는 장치 -전동체 : 니들롤러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철강재를 주조 또는 연삭하여 내외경, 볼, 부분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원산지증명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232	8483.10-9010	전동축 [캠 샤프트 (camshaft)와 크랭크샤프트 (crankshaft)를 포함]크랭크(crank) (제87류 차량용)	차량의 동력을 전달하는 차축  <제외대상> - 프로펠러 샤프트, 하프샤프트, 구동차축 (drive-axes) 등(제8708호)	한-중 FTA	철강재를 단조공정, 열처리, 표면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	
233	8483.30-9000	베어링하우징 (bearing housing)[볼 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 (roller	베어링을 감싸 축에 고정시키기 위한 프레임(필로우형, 플랜지형 등)	한-중 FTA	압연, 프레스, 선삭가공, 컴퓨터수치제어(CNC)가공 등을 거쳐 생산	완제품 형태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제품을 공급 받아 생산할 경우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하며, 항공 기용 제외]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plain shaft bearing) 제 외)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234	8483.40 -9010	기어	전동축과 물려 회전동 력을 전달하는 장치  <제외대상> - 반제품 형태의 단 조품(제7207호)	한-중 FTA	제72류 철강을 절 삭 또는 성형하여 생산, 또는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을 원료 로 사출 성형하여 생산	반제품 또 는 블랭크 (제8483호) 을 원재료 로 정밀 절 삭 공정 만 거쳐 생산 된 물품은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235	8483.50 -9000	플 라이 휠 (flywheel)과 풀 리 (pulley)[풀 리 블 록 ( p u l l e y block)을 포 함한다]로서 항공기용 이 외의 것	- (플라이휠) 축의 회전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한 바퀴(플라 이휠, 커버, 플렌지, 스프링, 베어링 등으 로 구성) - (풀리) 동력 전달 을 위해 로프를 걸어 회전 시키는 바퀴	한-중 FTA	제72류, 제73류의 철강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플라이 휠이나 풀리의 몸 체를 압연, 단조, 프레스, 선삭가공, 컴퓨터수치 제어 (CNC) 등의 공정 을 수행하여 생산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반 제품을 공 급 받아 생 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236	8501.10 -1000	직류 전동기	<제외대상> - 톨러 등이 결합된 컨베이어 벨트용 전 동기(제8431호) - 전자식의 진동 전 동기(제8479호) - 원동기가 부착된 발전기(제8502호)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전기자, 정류자, 브러시 등과 같은 전동기의 구성부 품을 조립하여 생 산(하우징 등 일부 구성요소가 불완 전 하지만 전동기 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경우라면 제 외)	
237	8505.19 -1000	전자석, 영 구자석 ( 산 화 철 의 것)	자성을 가진 전자석과 영구자석  <제외대상> - 가루형태의 자성 페라이트(제3824호) - 의료용으로 설계된 전자석(제9018호)	한-중 FTA	제2821호의 산화 철 등을 주 원재 료로 성형, 소결 공정을 거쳐 생산	
238	8507.10 -0000	피스톤식 엔 진 시동용	납음(-)극, 이산화납음 (+), 황산을 전해액으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납 등을 도포하여 양극판, 음극판을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연산(鉛酸) 축전지	로 사용하여 만든 엔 진 시동용 축전지  <제외대상> - 수명이 끝난 축전 지와 웨이스트(제 8548호)		만들어 전조에 격 리판, 단자 등을 조립하여 생산	
239	8507.60 -1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리튬(-)극, 탄소를 (+)극, 폴리머를 전해 질로사용한 축전지  <제외대상> - 1차 전지(제8506 호) - 수명이 끝난 축전 지와 웨이스트(제 8548호)	한-중 FTA	양극재(리튬코발트 산화물, 제2853호), 부극재(탄소, 제 3801호), 바인더, 도전재, 구리, 분 리막, 알루미늄 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하여 생 산한 축전지 또는 축전지 팩	리튬폴리머 축 전 지 를 공 급 받 아 충전용 배 터리 팩을 생 산 하 는 경우 간소 화 발급대 상에서 제 외
240	8507.60 -9000	리튬이온 축 전지 (리튬폴리머 축전지제외)	리튬(-)극, 탄소를 (+)극, 리튬이온염을 전해질로 사용한 축전 지  <제외대상> - 1차 전지(제8506 호) - 수명이 끝난 축전 지와 웨이스트(제 8548호)	한-중 FTA	양극재, 부극재, 바인더, 도전재, 구리, 분리막, 알 루미늄 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 하여 생산한 축전 지 또는 축전지 팩	리 튼 이 온 축 전 지 를 공 급 받 아 충전용 배 터리 팩을 생 산 하 는 경우 간소 화 발급대 상에서 제 외
241	8507.80 -0000	그 밖의 축 전지	연산(鉛酸), 니켈-카드 뮴, 니켈-철, 니켈-수 소합금, 리튬이온 축전 지 제외한 그 밖의 축 전지  *전기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했다가 필요시 전 기로 재생하는 장치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양극재, 부극재, 바인더, 도전재, 구리, 분리막, 알 루미늄 박, 축전지 부분품 등을 사용 하여 생산한 축전 지 또는 축전지 팩	
242	8514.40 -9000	그 밖의 전 자유도식이 나 유전손실 (dielectric loss)식 가열 기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 는 유도 전류를 열원 으로 이용하는 가열기 나 유전체에 교류 자 기장을 발생시켜 유전 체 속에서 열이 손실 되는 원리로 작동하는 가열기	한-중 FTA	주요 부분품 및 각 구성요소를 조 립하여 생산	완제품 형 태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반 제품을 공 급 받아 생 산할 경우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 상에서 제 외
243	9001.90 -1000	프리즘	빛의 분산이나 굴절 등을 일으키기 위한 광학장치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유리나 석영을 설 계된 굴절률과 반 사각등에 맞춰 재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수행 공정	비고
			<p>&lt;제외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유리거울(제7007호)</li> <li>- 도로·교통 표지판용 유리(제7014호)</li> <li>- 안경용·시계용 유리(제7015호)</li> <li>- 램프나 조명기구용 반사경 등(제9405호)</li> </ul>		<p>단, 연삭, 면취 가공하거나, 플라스틱 등에 광학성물질 등을 도포하거나 접착하여 생산</p>	

[별표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싱가포르와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별표4]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스탬프

"CERTIFIED TRUE COPY" (세로 0.8cm, 가로 7cm)

[별표5]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구 분		지 정 요 건
기본 요건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자격 시험 운영	합격 기준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 과목 (문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FTA 협정 및 법령 (25문항)</li> <li>2. 품목분류 실무 (25문항)</li> <li>3. 수출입 통관실무 (25문항)</li> <li>4. 원산지 결정기준 (25문항)</li> </ol>
	출제 위원	<p>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각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통상 관련분야(경제, 경영, 무역, 법학)에 대한 연구 논문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li> <li>2. 품목분류, 원산지 심사 등 FTA 원산지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li> <li>3.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li> <li>4.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li> <li>5. 시험과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li> </ol>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작성 예		
1.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12345-16-678901M		
2.수입신고수리일자	○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수리일자를 기재합니다.			2016. 9. 1		
3.수입자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4.신청의 종류	○ 인증요건 해당란에 “√”를 기재합니다.					
	작성요령			작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란 사항 정정인 경우:</li> <li>- 란 삭제인 경우:</li> <li>- 란 추가인 경우:</li> <li>- 란 사항 정정 및 란 추가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 X, X</li> <li>- X, D, X</li> <li>- X, X, I</li> <li>- U, X, I</li> </ul>		
5. 신청일자	○ 신청일자를 기재합니다.			2016. 9. 1		
6. 정정신청 사유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정정을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7. 란 사항 변경내역	○ 란 정정, 란 삭제, 란 추가 내역을 기재합니다.					
	<변경내역 기재요령 (작성예)>					
	란번호	구분부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001		10	발급번호	SCC01N200603010001	SCC01N201312310099
	001		16	환적국	JP	CN
	002	99D			002란	-
	003	99D			003란	-
		99I	5	신청일자	-	2013.12.31
		99I	6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1:원산지증명서
		99I	7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2:자율(수출자)
	99I	8	원산지	-	EU	
	99I	9	기관명 및 종류	-	3:기타	
	99I	10	발급번호	-	FR0099	
	99I	11	발급일자	-	2013/0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란 번 호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란번호를 기재, 란추가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공통사항은 '000' 을 기재</li> <li>- 구분부호 : [란정정인 경우] 기재안함, [란삭제인 경우] '99D' 기재, [란추가인 경우] '99I' 기재</li> <li>- 항목번호 : [란정정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li> <li>- 항 목 명 : [란정정인 경우] 항목명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명 기재</li> </ul>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현지확인 통지서

문서번호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현지확인일자			
방문자	(직위)	(성명)	(연락처)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 수리일자	
원산지증명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확인할 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 계획을 통지합니다.
2. 위의 기간에 현지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고시 제29조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동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세 관 장 (직인)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

신청인	현지확인예정통보 문서번호	접수일
	상호	전화번호/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Address)	
연기(희망)기한	(yyyy/mm/dd ~ yyyy/mm/dd)	
신청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Signature)

○ ○ 세 관 장 귀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현지 확인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한: 7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FAX/전자우편 주소
	소재지(주소)	
현지 확인 대상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FAX/전자우편 주소
	증명서발급 신청번호	증명서발급신청일자
	주소	
요청 사유		
확인할 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상공회의소회장 (직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 3. 원산지 소명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승인)서

※ 발급기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발급신청번호		발급신청일자	
2. 신청인	구 분 [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3. 원산지인증 수출자	비해당 [ ] 해당 [ ] (인증번호: )		
4. 신청 협정			
5. 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6. 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7. 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8. 신청일자			
9. 신청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 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승인번호	
------	--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 ○ 상공회의소 회장 (직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 번호	2.작성일	품명			원산지		공급 받는 자		10.포괄확인 기간	11.자유무역협정
		3.품명	4.품목번호	5.수량	6.원산지	7.결정기준	8.상호	9.사업자번호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작성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2.작성(서명)일	○ 원산지확인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3.품명	○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4.품목번호(HS No.)	○ 원산지확인서의 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5.수량	○ 해당물품의 총 수량을 기재합니다.
6.원산지	○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7. 결정기준	○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8.공급받는 자 상호	○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9.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0. 포괄확인기간	○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원산지확인서에 기재된 포괄확인 기간을 기재합니다.(다만, 최초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자유무역협정	○ 해당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명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Application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간(Processing duration) 20일(20 days)

1. 신청인 (Applicant)	상호(Company Name)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신청구분(Applicant) [ ] 업체(Company) [ ] 관세사(Customs broker)
2. 공급 하는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 공급 받는자에게 확인 사실 통보 여부  
[ ] FTA포털에 게시 및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공급 받는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통보 사서함(Post office Box)

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Reference No.)

5.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Blanket period]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mm dd, yyyy ~ mm dd, yyyy)

###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6. 연번 (S/N)	7. 제품번호 (Goods No.)	8. 품명 (Description of Good(s))	9. 적용협정 (Name of FTA)	10. 품목번호 (HS No.)	11.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 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3.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충족 (Y)	불충족 (N)	

참고사항(Notice) :

※ 원산지 기준 불충족물품은 국내 부가가치, 주요 공정내역 등을 기재 하세요 (As for goods whose origin criterion is not fulfilled, information such as RVC rate or major process flow is required to be written.)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requests confirmation on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by Customs Collec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Applicant)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세관장 귀 하

(Customs Collector of 00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12란에 불충족으로 표시된 건은 제외한다)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has been properly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2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Only valid for cases in which origin criterion has been fulfilled.)

년    월    일(YYYY/MM/DD)

○○세관장 직인

(Customs Collector of 00 Customs) 직인(Seal)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6. 연번 (S/N)	7. 제 품 번 호 (Goods No.)	8. 품 명 (Description of Good(s))	9. 적용협정 (Name of FTA)	10. 품목번호 (HS No.)	11.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 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3.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충족 (Y)	불충족 (N)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

문서번호

세관장 확인 신청번호		신청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보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보완요구사유		
보완할 사항		
문의처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2. 위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년 월 일

○○세관장 (직인)

귀 중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DECLARATION OF ORIGIN

Issuing Number :

1: Producer(Name and Address)				
Tax ID No :				
2: Exporter(Name and Address)			3: Im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Declar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li> <li>1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of origi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of origin.</li> <li>1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li> </ul>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Email	

[별지 제10호서식 작성요령]

□ 공통 요령

- 원산지신고서는 영문으로 작성·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 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요령

항목	기재조건	기재사항
Issuing Number		· 원산지신고서 일련번호 기재
1. Producer		·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 Exporter		·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3. Importer	·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 “UNKNOWN” 기재
	·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 HS번호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송품장번호 기재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한 HS번호(6단위) 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 협정 부속서 4 특혜기준 참조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 내지 D) 기재
7. Regional Value Content	·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U” 기재
8. Country of Origin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 “KR” 기재
	·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 “CL” 기재
9. Remarks	·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2. 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 자 르 는 선 .....

접수번호 (Receipt No.)	
-----------------------	--

위와 같이 원산지관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일: 년 월 일

관세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제 호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

- 시행기관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 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 사전심사서 (Notification of Advance Ruling)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승인번호(Approval No.)	승인일자(Approval date)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Agent) [ ]    계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계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수입자 (Im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수출자 (Exporter)	성명(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심사 유형 (Type of Advance Rulings)	원산지(Country of Origin) [ ]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 [ ] 관세환급·감면(Duty Drawback/Reduction or Exemption) [ ]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Marking) [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ariff Rate Quotas) [ ] 기타(Other) [ ]								
신청물품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40%;">품명 (Description)</th> <th style="width: 30%;">규격 (Specification)</th> <th style="width: 30%;">품목번호(6단위) [HS No.(6-digit)]</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30px;">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ification)	품목번호(6단위) [HS No.(6-digit)]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ification)	품목번호(6단위) [HS No.(6-digit)]							
결정내용 및 사유 (Content of Advance Ruling & Reasons)									

### 주의사항 (Notice)

수입신고 시 이 심사서의 품명·규격과 수입신고서 및 실제 물품의 품명·규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When imports are declared,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stated above should correspond to the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stated in import declaration and those of actual good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Result of advance ruling is notifi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2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관 세 청 장**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직인  
(seal)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신청(승인)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Receipt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한 7일
사전심사서 변경 문서번호		통지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인 구분	수입자 [ ]    대리인(관세사) [ ]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전자우편주소
	주소	
유예신청 대상품목	대상 품명	품목번호(HS No.)
	수량	금액
유예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첨부서류 (Attachment)	1.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손해발생 내역 기재서류 3.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내용의 적용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승인번호	
------	--

위와 같이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적용 유예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직인)

